

부모/후견인/대리부모를 위한 통보

절차상 보호,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의료 청구 프로그램에 대한 학구(學區)의 참여



파사디나 통합 학구
특수교육 국지계획 지역
351 South Hudson Ave
Pasadena, CA 91101
626/396-3600 ext. 88600

이 문건은 귀하의 권리에 대한 서술입니다.
차후 참조하실 수 있도록 이 문건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아동의 특수교육 권리
장애인교육법, B 부(部),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육 규정 하

2018년 3월 개정

절차상 보호의 통보

2016년 10월 개정 캘리포니아 교육부¹

주석: “학구” 라는 용어는,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공립교육대행기관²을 지칭하기 위하여 이 문건 전체에 걸쳐 사용됩니다. “사정(査定)³” 이라는 용어는 평가 혹은 시험이라는 뜻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연방, 주법은 이 통보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해설목록에 설명되어있는 영문약자로 이 주석 전체에 걸쳐 인용됩니다.

절차상 보호 통보란 무엇인가?

이 정보는 3 세로부터 21 세 까지의 장애아, 성년의 나이인 18 세가 된 학생의 부모, 법적 후견인, 대리부모(이후로는 “부모”)로서의 귀하에게 교육권과 절차상 보호의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교육법⁴에 의하면, 절차상 보호의 통보가 요구되며, 하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 귀하가 그 사본을 요구할 경우;
-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 사정에 처음으로 알선받았을 때;
- 귀하의 자녀를 평가하기 위한 사정계획을 받게되었을 때마다;
- 학년중 첫번째 주(州) 혹은 적법절차 공소가 접수되었을 때;
- 배치변경으로 여겨지는 이전(移轉)을 실시하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20 USC⁵ 1415[d]; 34 CFR⁶ 300.504; EC⁷ 56301[d] [2], EC 56321, and 56341.1[g] [1])

장애인교육법이란 무엇인가?

장애인교육법이란 학구가 자격을 갖춘 장애아동에게 무료적정공교육(FAPE)⁸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연방법입니다. 무료적정공교육은 개인별교육프로그램⁹에서 서술된 바와 같은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이 공적 감독하에 귀하의 자녀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인 자녀의 교육에 관한 결정에 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어떠한 회합에도 귀하가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만합니다. 귀하는 자녀의 무료적정공교육에 관한 식별, 사정, 교육적 배치 그리고 기타의 사항에 대한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 회합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USC 1414[d] [1]B-[d][1][D]; 34 CFR 300.321; EC 56341[b], 56343[c])

부모, 후견인, 국지교육대행기관은 개인별교육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한 참여,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회합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녹음하겠다는 의사를 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회합의 24 시간

¹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² Public Education Agency

³ Assessment

⁴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⁵ United States Code: 미합중국 규정

⁶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 규칙 규정

⁷ Education Code: 교육 규정

⁸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⁹ IEP: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전에, 부모 혹은 후견인은 국지교육대행기관에게 개인별교육프로그램의 음성녹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들도 회합의 녹음을 하겠다는 의사를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의 참가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 또는 후견인이 국지교육대행기관에게 개인별교육프로그램의 음성녹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합은 녹음기에 녹음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는 모든 프로그램의 선택사항 그리고 모든 가능한 공립, 사립 대안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무료적정공교육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20 USC 1401[3], 1412[a][3]; 34 CFR 300.111; EC 56301, 56341.1[g][1], and 56506)

어디에서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을 때, 귀하가 자녀나 귀하가 보는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자녀의 교사 혹은 행정관과 이야기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학구 혹은 특수교육국지계획지역의 직원이 귀하 자녀의 교육, 귀하의 권리와 절차상보호에 관한 질문에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고려사항이 있을 때, 때때로 이 비공식 대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귀하는 또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부모와 교육자간 상호협조를 증강시키기 위해 개발된 캘리포니아 부모 기구들(가족권한센터¹⁰ 그리고 부모훈련협회¹¹) 중 하나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의 연락 정보는 캘리포니아 교육부 특수교육 캘리포니아 부모 기구 웹페이지, <http://www.cde.ca.gov/sp/se/qa/caprntorg.as>, 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상보호에 관한 귀하의 이해를 돕기위한 추가 출처들은 이 문건의 마지막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자녀가 청각상실, 난청, 시각상실, 시각장애 혹은 농아라면?

주 특수학교들이 하기한 3 군데에서 각기 청각상실, 난청, 시각상실, 시각장애, 농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리몬트(Fremont) 그리고 리버사이드(Riverside) 소재 청각상실 학생, 프리몬트 소재 시각상실 학생 캘리포니아 학교. 청각상실 학생을 위한 캘리포니아 학교 두군데 모두 유아기부터 21 세까지의 학생들에게 거주지 그리고 주간(晝間)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 세에서 21 세까지의 학생들에게 캘리포니아 시각상실 학교에서 전술한 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 특수학교는 또한 사정서비스와 기술적 보조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특수학교에 관한 추가정보는 캘리포니아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cde.ca.gov/sp/ss/> 에 접속하시거나 귀하 자녀의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 구성원들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하십시오.

¹⁰ Family Empowerment Center (FEC): 부모, 후견인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년의 가족들이 정확한 정보, 특수화된 훈련, 개인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FEC는 3 세에서 22 세 까지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¹¹ Parent Training Institute (PTI): PTI는 IDEA, 특수교육, 장애에 관한 워크샵과 훈련 수업을 제공합니다.

통보, 동의, 사정, 대리부모 지정 그리고 기록 열람

사전 문자 통보

언제 통보가 필요합니까?

이 통보는 학구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귀하 자녀의 인식, 사정 혹은 교육적 배치나 무료적정공교육 조항의 변경을 개시하기 위한 제의 혹은 제안을 할 때, 주어져야만 합니다. (20 USC 1415[b][3] and (4), 1415[c][1], 1414[b][1]; 34 CFR 300.503; EC 56329 and 56506[a])

학구는 귀하에게 자녀를 위한 제안된 평가에 관하여 반드시 서면통보 하여야하며, 혹은 사정계획 평가를 위한 귀하의 서면 요청 15 일 이내에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 통보는 그것이 확연히 행해질 수 없는 것이 아닌 이상, 귀하의 모국어로 혹은 다른 소통형식으로 이해가능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34 *CFR* 300.304; *EC* 56321) 반드시

그 통보가 본인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전통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만합니다.

1. 학구의 제안된 혹은 거부된 조치의 서술
2. 왜 그 조치가 제안되거나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3. 각 사정절차, 기록 혹은 대행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의 근거로 활용된 보고서의 서술
4. 절차상보호하에서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진 보호의 진술
5. 이 부문의 조항들의 이해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출처
6.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이 고려하는 다른 선택사항들과 그러한 선택사항이 거부된 이유; 그리고
7. 제안 또는 거부된 조치와 연관된 다른 모든 요소들의 서술. (20 *USC* 1415[b][3] and [4], 1415[c][1], 1414[b][1]; 34 *CFR* 300.503)

부모 동의

언제 사정을 위한 본인의 동의가 요구됩니까?

귀하는 본인 자녀의 특수교육서비스들을 조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녀의 최초 특수교육사정이 진척될 수 있도록 숙지(熟知)된 서면동의를 제공해야만합니다. 부모는 제안된 사정계획의 수령으로부터 최소 15 일 이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의 수령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귀하의 동의 후 60 일 이내에 반드시 완수되고, 개인별교육프로그램 개발화 되어야만합니다.

언제 서비스를 위한 본인의 동의가 요구됩니까?

귀하는 학구에서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기 전에 숙지된 서면 동의를 해주어야만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만일 귀하가 최초 사정을 동의해주지 않거나 동의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학구는 최초 사정을 적법절차¹²에 따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서비스 시작에 동의하기를 거부한다면, 학구는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적법절차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¹² Due Process: 適法節次

만일 귀하가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에 대한 서면동의를 했으나, 모든 개인별교육프로그램의 구성부분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 귀하가 동의한 구성부분들은 지연없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학구가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제안된 특수교육프로그램 구성부분이 귀하 자녀의 무료적정공교육 제공에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적법절차 공소가 착수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적법절차 공소가 열린다면, 공소판결은 최종적이며, 법적구속력을 가질 것입니다.

재평가의 경우, 학구는 귀하의 동의를 얻기위해 타당한 조치들을 반드시 서면화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귀하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학구는 귀하의 동의없이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본인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의 최초 제공 이후에는 언제라도, 아동의 부모는 계속되는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립대행기구는:

1. 계속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서비스들을 중단하기 전에 연방규칙규정 34 300.503 절에 따라 사전 서면통보를 제공해야만합니다.
2. 연방규칙규정 34, 300 34 부, 하부 E 에 있는 절차 (연방규칙규정 34, 300.506 절의 중재절차 혹은 연방규칙규정 34, 300.507 절부터 300.516 절까지의 적법절차과정 포함) 들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의 속행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해당아동에게 무료적정공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하는 필요조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4. 개인별특수교육프로그램 팀의 회합 소집이나, 연방규칙규정 34, 300.320 절이나 300.324 절 하의 해당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의 속행이 요구되지않습니다.

연방규칙규정 34, 300.9 절 (C)(3)에 따르면, 만일 부모가 최초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의 수령 후에, 그들의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들의 수령 동의를 서면철회한다면, 공립대행기구는 동의철회 때문에 해당아동의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의 수령에 대한 어떠한 언급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아동의 교육기록을 변경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대리부모 지정

만일 부모가 식별 또는 위치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식별될 수 없거나, 학구가 부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때, 학구는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해 대리부모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개인을 안배하는 것에 반드시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만일 해당아동이 동행자가 없고 무숙¹³ 청소년이거나, 주 복지와 보호시설 규정 하에 법정 종속인,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있는, 그리고 특수교육을 추천받았거나 이미 개인별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또한 대리부모는지명될 수 있습니다. (20 USC 1415[b][2]; 34 CFR 300.519; EC 56050; GC 7579.5 and 7579.6)

비차별적 사정

특수교육 서비스들을 위해 본인의 자녀가 어떻게 사정됩니까?

귀하는 자녀를 모든 장애가 의심되는 부분에 사정을 받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정과 배치를 위해 활용되는 자료와 절차들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성적(性的)으로 비차별적이어야만 합니다.

사정 자료는 제공되어야만하며, 시험은 자녀의 모국어 혹은 소통형식 그리고 그것이 확연히 실현가능치않아 제공되거나 집행할 수 없지않는 한, 해당아동이 아는 것, 그리고 학문적으로, 발달상으로,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심층팔구 산출해낼 수 있는 형태로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자녀를 위한 자격 결정과 무료적정공교육의 발달에 대해 어떤 일개 과정도 유일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20 USC 1414[b][1]-[3], 1412[a][6][B]; 34 CFR 300.304; EC 56001[j] and 56320)

독립적 교육 사정

학구의 비용으로 본인의 자녀가 독립적으로 시험될 수 있습니까?

만일 귀하가 학구가 시행한 사정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자녀를 위하여 학구의 비용으로 사정을 시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적 교육사정을 요청하고 획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오직 한번 매번 공립대행기구가 부모가 동의하지않은 평가를 시행할 시에 공공비용으로 독립적 교육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구는 귀하의 독립적 교육사정 요구에 반드시 응답하여야만하며, 귀하에게 어디서 독립적 교육사정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만일, 학구가 자체 사정이 적정하다고 믿거나, 독립적 교육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않는다면, 학구는 학구에 의한 사정이 적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적법규정절차 공소를 요청해야만합니다. 만일 학구가 승소한다면, 귀하는 그래도 독립적 사정을 할 수 있으나, 공공비용으로는 안됩니다.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은 독립적 사정을 반드시 고려해봐야만합니다.

학구 사정 과정은 교실내에서의 학생 관찰을 허용합니다. 만일 학구가 사정중에 귀하 자녀를 교실내에서 관찰한다면, 혹은 학구가 귀하 자녀의 관찰을 허용한다면, 독립적 교육사정을 수행하는 개인도 교실내에서 귀하 자녀를 관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합니다.

만일 학구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새로운 학교 환경을 제안하고, 독립적 교육사정이 수행되고 있다면, 독립적 사정인이 먼저 제안된 새로운 환경을 관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만합니다. (20 USC 1415[b][1] and [d][2][A]; 34 CFR 300.502; EC 56329[b] and [c])

¹³ Homeless: 無宿

교육기록 열람

본인 자녀의 교육기록들을 검사해볼 수 있습니까?

귀하는 자녀의 모든 교육기록을 자녀의 개인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회합 전, 적법절차과정 공소 전을 포함하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요청되었다면, 학구는 귀하에게 그 요청이 구두로나 서면으로 요청된 후 5 일 이내에 기록 열람과 사본을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EC 49060, 56043[n], 56501[b][3], and 56504)

어떻게 분쟁이 합의되는가

적법절차 공소

언제 적법절차 공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자녀의 식별, 사정, 교육적 배치나 무료적정공교육 제공에 관하여 공평한 적법절차 공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절차 공소의 요청은 귀하가 적법절차 공소를 형성케하는 근거가 되는 혐의를 받고있는 행동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하는 날로부터 2 년내에 접수되어야만합니다. (20 USC 1415[b][6]; 34 CFR 300.507; EC 56501 and 56505[1])

중재 그리고 대체 분쟁 합의

본인이 중재나 분쟁 합의를 위한 대체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중재 요청은 적법절차 공소가 접수되기 전이나 혹은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학구에 적법절차 공소보다 덜 적대적인 중재나 대체 분쟁합의¹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분쟁합의와 중재는 분쟁 합의의 자발적 방법이며, 귀하의 적법절차 공소 권리를 지체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없습니다.

공소전 중재 회의란 무엇인가요?

귀하는 적법절차 공소 요청 접수 전에 중재를 통하여 합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회의는 비공식적 태도로 행해지며, 해당아동의 자격, 사정, 교육적 배치 혹은 무료적정공교육에 관한 문제점들의 합의도출을 위한 비적대적 절차입니다.

부모나 학구는 공소전 중재회의에서 변호사가 아닌 대변인을 동행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의전 또는 후에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전 중재회의는 적법절차를 요청하기위한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공소전 중재회의를 위한 모든 요청은 감독관¹⁵에게 접수되어야합니다.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접수시켜 공소전 중재회의를 개시하는 측은 요청이 접수됨과 동시에 그 사본을 중재의 상대측에게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양측이 시간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공소전 중재회의는 감독관이 중재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15 일 이내에 일정이 잡혀야하며, 중재 요청이 접수된 후 30 일 이내에 완수되어야합니다. 만일 합의에 도달하면, 양측은 그 합의를 적용할 법적구속력이 있는 서면동의서를 이행하여야합니다. 중재 절차중의 모든 의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소전 중재회의는 적시에 일정이 잡혀야하며, 양측에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려야합니다. 만일 문제점들이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중재회의를 요청한 측이 적법절차 공소의 선택권을 가집니다. (EC 56500.3 and 56503)

적법절차 권리

본인의 적법절차 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¹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¹⁵ Superintendent

1. 특수교육을 관장하는 법과 행정청문회에 정통한 개인에게서 주(州) 수준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청문회¹⁶를 할 수 있는 권리 (20 USC 1415[f][1][A], 1415[f][3][A]-[D]; 34 CFR 300.511; EC 56501[b][4]);
2. 변호사, 그리고/혹은 장애아동에 지식이 있는 개인과 동행, 자문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EC 56505 [e][1]);
3. 증거 제출, 서면 논증, 구두 논증의 권리 (EC 56505[e][2]);
4. 증인의 대질, 반대신문, 참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C 56505[e][3]);
5. 청문회의 발견된 사실과 판결을 포함한 서면 혹은 부모의 선택사항으로, 전자적 축어(逐語)¹⁷ 기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EC 56505[e][4]);
6. 청문회에 귀하의 자녀를 참석시킬 수 있는 권리 (EC 56501[c][1]);
7. 청문회를 공개 혹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권리 (EC 56501[c][2]);
8. 청문회 열리기 전, 5 일의 업무일¹⁸내에, 일자와 권고사항을 포함한 사정, 증인 명단, 그들의 증언의 구분야(主分野)를 포함하는 모든 문건의 사본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EC 56505[e][7] & 56043[v]);
9. 상대측의 문제점과 그들의 문제점에 대한 합의 제안을 청문회가 열리기 전, 최소 10 일의 역일(曆日)¹⁹ 전에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 (EC 56505[e][6]);
10.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CCR 3082[d]);
11. 청문회 일정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EC 56505[f][3]);
12. 적법절차 공소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중재회합을 할 수 있는 권리 (EC 56501[b][2]);
13. 상대측으로부터 변호사에 의한 변호를 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최소 10 일 이전에 그 의사통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EC 56507[a]). (20 USC 1415[e]; 34 CFR 300.506, 300.508, 300.512 and 300.515).

서면 적법절차 고소 접수

본인이 어떻게 적법절차 공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적법절차 공소의 서면요청을 접수시켜야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다음의 정보를 요청내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해당아동의 이름
2. 해당아동의 주거지 주소
3. 해당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4. 무숙자 아동의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해당아동의 연락처, 그리고 다니는 학교의 이름
5. 문제점과 연관이 있는 사실과 그 문제점을 위한 제안된 합의를 포함한 문제점의 본질의 서술

¹⁶ Administrative Hearing

¹⁷ Verbatim: 말한 것 그대로의

¹⁸ Business Day: 월 화 수 목 금요일

¹⁹ Calendar Day: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연방법과 주법은 적법절차 공소를 접수시킨 어느 한 측이 서면요구서의 사본을 다른 측에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 USC 1415[b][7], 1415[c][2]; 34 CFR 300.508; EC 56502[c][1])

적법절차 공소를 접수하기 전에, 학구는 부모와 적법절차 공소요청서에서 식별된 사실들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이 있는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의 관련 구성원들의 회합인 합의회의를 통해 문제의 합의를 이룰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 USC 1415[f][1][B]; 34 CFR 300.510)

합의회의²⁰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합의회의는 해당부모의 적법절차 공소요청 통보 수령 15 일 이내에 소집되어야합니다. 그 회의는 부모가 변호사와 동행하지않는한, 학구의 변호사를 제외하고, 결정권이 있는 학구의 대변인을 포함해야합니다. 해당아동의 부모는 적법절차 공소의 안건과 적법절차 공소요청의 근거를 형성한 사실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회의는 만일 부모와 학구가 서면으로 회합을 포기하기로 동의한다면 요구되지 않습니다. 만일 학구가 30 일 이내에 적법절차 공소의 안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적법절차 공소는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에 이르게된다면, 양측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의를 실행하여야합니다. (20 USC 1415[f][1][B]; 34 CFR 300.510)

공소절차 중에 본인 자녀의 배치가 바뀔까?

모든 행정적 혹은 법적 절차에 관련된 아동은 귀하와 학구가 별도의 안배로 동의하지 않는한, 현재의 교육적 배치에 계속 있어야합니다. 만일 귀하가 자녀의 최초 신청을 공립학교에 하고 있다면, 귀하의 자녀는 모든 절차가 완수될 때까지 귀하의 동의하에 공립학교로 배치될 것입니다. (20 USC 1415[j]; 34 CFR 300.518; EC 56505[d])

판결을 항소할 수 있습니까?

공소판결은 양측에 모두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어느 측이라도 최종판결 90 일 이내에 주 혹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하여 공소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0 USC 1415[i][2] and [3][A], 1415[l]; 34 CFR 300.516; EC 56505[h] and [k], EC 56043[w])

누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합니까?

만일 귀하가 공소에서 승소한 측이라면, 적법절차 공소에 관한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에서라도 법원은 그 재량으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로서의 귀하에게 적절한 변호사 수임료를 비용의 일부로서 지급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변호사 수임료는 또한 행정청문회의 종료 후에 양측의 동의와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20 USC 1415[i][3][B]-[G]; 34 CFR 300.517; EC 56507[b])

만일 하기한 조건이 우선하다면 수임료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1. 법원이 귀하가 부적절하게 논란의 최종 합의를 지체시켰다고 판정;

²⁰ Resolution Session: 合意會議

2. 변호사의 시간당 수임료가 공동체내의 일반적인 요금을 초과;
3. 소요된 시간과 법적 서비스가 과다;
4. 귀하의 변호사가 학구에게 적법절차 요청 통보내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그렇지만, 만일 법원이 주나 학구가 소송 혹은 과정의 최종 해결을 부적절하게 지체시켰다고, 혹은 이 부분의 법에 대한 위반의 있었다고 판정한다면, 변호사 선임료는 감액되지 않을 것입니다. (20 USC 1415[i][3][B]-[G]; 34 CFR 300.517)

어떠한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의 회합에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는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 회합의 개최가 적법절차 공소, 혹은 소송의 결과가 아닌 한 지급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학구/공립대리기구의 적정한 합의 제안을 공소가 시작되기 10 일 전에 거부하거나, 공소 판결이 합의 제안보다 더 좋지않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 (20 USC 1415[i][3][B]-[G]; 34 CFR 300.517)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혹은 중재나 적법절차 공소를 접수하려면 하기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행정청문회 사무실²¹
수신: 특수교육분과²²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916) 263-0880
FAX (916) 263-0890

장애학생의 학교 징계와 배치 절차

학교 징벌과 대체 임시 교육적 환경

본인의 자녀가 정학 혹은 퇴학당할 수도 있습니까?

²¹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²² Special Education Division

학교 직원들은 자신의 환경내에서 학생 행동규칙을 위반한 장애아동을 위한 배치변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할 때에 개별적으로 어떠한 특이한 환경이라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란:

- 적절한 임시대체 교육환경²³, 다른 환경 혹은 10 일 연속 이하의 학교일 정학;
- 별개의 범칙행위에 대한 같은 학년내 10 일 연속 이하의 학교일 추가 이전.

10 일 이상의 이전 후에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장애아동이 현재 배치에서 같은 학년에서 10 일 간 이전된 후, 어떠한 추후의 이전 동안에도, 공립대리기관은 반드시 아동이 계속 일반 교육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당아동의 개인별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만합니다. 또한 아동은 적정하다면, 행동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적 행동 사정과 행동 조정 서비스와 수정을 받게될 것입니다.

만일 아동이 그러한 배치에서 10 일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아동의 비행(非行)이 장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 회합이 반드시 열려야합니다. 이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 회합은 가능하다면 즉각 열려야만하며, 아니면 학구가 이러한 형태의 징벌을 결정한지 10 일 이내에 열려야만 합니다.

부모로서 귀하는 개인별교육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될 것입니다. 학구는 비행에 대처하기 위한 사정계획을 개발하기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혹은 귀하의 자녀가 행동조정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을 필요에 따라 검토, 수정하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이 비행이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만일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이 그 비행이 해당아동의 장애 징후가 아니라고 결론낸다면, 학구는 장애가 없는 아동과 같은 방식으로 퇴학과 같은 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 USC 1415[k][1] and [7]; 34 CFR 300.530)

²³ The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 Setting (IAES): 해당 아동이 개별특수교육프로그램 팀이나 청문판사의 결정에 의해 45 일의 출석일 이내로 배치되어지는 적절한 환경 (An appropriate setting determined by the child's IEP team or a hearing officer in which the child is placed for no more than 45 school days).

U.S. DEPARTMENT OF EDUCATI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IDEA) Removal to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 File Specifications, Version 9.0, SY 2012-13, April 2012.*

이것은 해당 학생이 심각한 품행상 규칙위반을 범했을 때, 즉시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교사측의 주장과 어떤 장애학생도 무료적정공교육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권익대변인의 목표에 공히 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The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 Setting (IAES) provision was designed to address both the needs of educators who argued that immediate removal from school is essential when students commit serious conduct violations and the goals of advocates who contended that no student with disabilities must be denied FAPE).

<https://www.questia.com/read/1G1-79855721/interim-alternative-educational-settings-school-district>

만일 귀하가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본인이 공소를 요구한 날부터 20 학교일 내에 열려야만하는 긴급 적법절차 공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 USC 1415[k][2]; 34 CFR 300.531[c])

환경과 무관하게 학구는 귀하의 자녀를 위하여 무료적정공교육을 반드시 계속 제공해야만합니다. 대체 교육적 환경은 해당아동에게 일반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별교육프로그램에 상기(詳記)된 서비스들과 수정의 연속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락되어야합니다.

사립학교에 출석하는 아동

부모에 의해 사립학교로 배치된 학생이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까?

부모에 의해 사립학교에 등록된 아동은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구는 사립학교 학생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사립학교와 그리고 부모와 상담하여야만합니다. 학구가 장애학생에게 무료적정공교육을 제공하는 분명한 의무가 있으나, 부모에 의해 사립학교에 배치되었을 때, 해당아동은 무료적정공교육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일부분 혹은 전부의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을 수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20 USC 1415[a][10][A]; 34 CFR 300.137 and 300.138; EC 56173)

학구의 권한하에 특수교육 그리고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을 전에 받았던, 이례적인 필요가 있는 한 개인의 부모가 그 아동을 국지교육대리기구의 동의나 알선없이 사립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²⁴에 등록시켰다면, 그리고 만일 학구가 무료적정공교육을 가용(可用)케 해왔다면, 학구는 특수교육 제공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구가 무료적정교육을 해당아동에게 사립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록전에 적시(適時) 가용하게 하지않았을 경우, 그리고 사립학교 배치가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나 적법절차 공소 담당관은 학구가 해당 부모나 후견인에게 특수교육과 사립학교의 비용을 상환(償還)²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 USC 1412[a][10][C]; 34 CFR 300.148; EC 56175)

어떤 경우에 배상이 감액되거나 거부될수도 있습니까?

자녀를 공립학교로부터 전학시키기 전, 만일 귀하가 학구로부터 통보 받았을 때, 자녀가 사정을 받을 수 있게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나 공소 담당관은 상환을 감액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귀하의 고려사항 그리고 자녀를 공공지출로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겠다는 의도의 서술을 포함하는 학구에 의해 제안된 특수교육 배치의 거절을 학구에 통보하지않았다면, 상환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학구로의 통보는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만합니다.

-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전학시키기 전, 귀하가 참석한 최근의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 회합에서; 혹은
-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전학시키기 최소한 10 일의 업무일(휴일포함)전, 서면으로 학구에. 20 USC 1412[a][10][C]; 34 CFR 300.148; EC 56176)

어떤 경우에 배상이 감액되거나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일 귀하가 다음 열거한 중 어떠한 이유로 학구에 서면통보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이나 공소담당관은 반드시 귀하에게 감액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야합니다.

- 학교가 통보 제공을 막았을 때
- 귀하가 이 절차상 보호 통보의 사본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나 아니면, 학구에 통보해야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을 때
- 통보의 제공이 귀하의 자녀에게 심중팔구 신체적 위해를 야기했었을 때

²⁴ Secondary School

²⁵ Reimbursement

- 귀하가 영문독해와 영작(英作)불능으로 인해 통보를 하지못했을 때
 - 통보의 제공이 귀하의 자녀에게 심중팔구 심각한 감정적 피해를 야기했었을 때
- (20 *USC* 1412[a] [10] [C]; 34 *CFR* 300.148; *EC* 56177)

주(州) 고소 절차

언제 본인이 주 규정준수²⁶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학구가 연방 혹은 주의 특수교육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는다면, 귀하는 주 규정준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서면고소는 연방 혹은 주의 특수교육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귀하가 주장하는 사항을 최소 1 개는 적시(摘示)²⁷ 하여야만 합니다. 고소를 접수시킬 때는, 귀하는 반드시 고소장의 사본을 귀하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주 규정준수 고소장을 접수시킬 때, 학구에 전달하여야만 합니다. (34 CFR 300.151-153; 5 CCR 4600)

연방 혹은 주의 특수교육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은 다음의 주소로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교육부)
Special Education Division (특수교육분과)
Procedural Safeguards Referral Service (절차상 보호 알선 서비스)
1430 N Street, Suite 2401
Sacramento, CA 95814

연방이나 주 특별교육법이나 규정이 **다루지 않는** 문제점에 관한 고소는 귀하 학구의 통일고소절차²⁸를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고소장을 접수시키는지 포함, 분쟁조정에 대한 추가의 정보를 취득하려면 캘리포니아 교육부, 특수교육분과, 절차상 보호 알선 서비스에 전화 (800) 926-0648; 팩스 (916) 327-3704, 혹은 캘리포니아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cde.ca.gov/sp/se> 를 참조하십시오.

이 통보에 사용된 약자 용어 목록

²⁶ Compliance

²⁷ 摘示: 지적하여 제시함

²⁸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 분쟁합의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규칙규정
EC	California Education Code	캘리포니아 교육규정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무료적정공교육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인교육법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개인별교육프로그램
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행정청문회 사무실
SELPA: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	특수교육 국지 계획지역
USC:	United States Code	미합중국 규정

부모 권리 통보

이 정보는 3 세부터 21 세까지의 장애아동, 그리고 성년 나이인 18 세가된 학생의 부모, 법적 후견인, 대리부모(이후로는 “부모” 로 통칭함)로서의 귀하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있는 학생을 위한 절차상 보호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해당아동의 학구와 특별교육국지계획지역의 다수의 직원들이 그 아동의 교육,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고려사항이 있을 때, 그들이 자녀와 그들이 보고있는 여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녀의 교사들 혹은 행정직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자주 문제를 해결하고, 열린 소통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모는 그들 자녀를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 회합에도 참가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만 합니다. 부모는 그들 자녀의 특수교육 식별, 사정, 교육적 배치나 무료적정공교육에 연관된 다른 문제들에 대한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회합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식별 또는 위치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학구는 해당 장애아동을 대변하기 위한 대리부모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특수교육의 부모권리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부모와 18 세가 넘는 학생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참가권**

부모는 개인별교육프로그램의 발전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공립과 사립 양쪽의 모든 프로그램 선택사항과 대체수단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특수교육 서비스에 자녀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 **사전서면통보 수령권**

부모는 학구가 특수교육 범위내에서 그들 자녀의 식별, 사정, 교육적 배치 개시의 변경을 개시하기위한 요청을 개시하거나 혹은 거부할 때, 그들의 모국어로된 사전서면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권**

부모는 그들 자녀의 사정 혹은 어떠한 특수교육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때, 반드시 숙지된 서면 동의를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특수교육 서비스들에서 발생할수도 있는 여하한 변경 전에, 또한 부모동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학구는 또한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를 위한, 혹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부모를 위한 통역의 주선을 포함하는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팀 회합의 절차를 부모가 이해하는 것을 반드시 보증하여야만 합니다

- **동의 거부권**

부모는 특수교육을 받고있는 자녀의 사정 혹은 배치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비차별적 사정 수령권**

아동은 문화적으로 편견적이거나 차별적이 아닌 방법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 사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 **독립적 교육 사정 수령권**

만일 부모가 학구가 시행한 사정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공공지출로 독립적 교육평가²⁹ 획득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번 공립대리기구가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평가를 실시했을 때마다, 부모는 오직 한 번 독립적 교육사정을 공공지출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지출 독립적 교육평가를 부모가 요청했을 때, 학구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공공지출 독립적 교육평가를 반드시 보장하여야만 하거나, 만일 학구가 그들의 사정이 적정하며 독립적 교육평가는 불필요하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적법절차 공소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학구는 또한 공공지출 독립적 교육평가의 비용과 장소를 포함하는 표준 혹은 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기록 열람권**

부모는 그들 자녀의 교육기록을 조사, 검토 및 사본을 획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 **배치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을 시, 현재의 프로그램에 머물 권리**

만일 자녀의 특수교육 배치나 배치 변경에 부모가 학구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은 해당학생이 현재의 프로그램에 “머물 것³⁰”을 요구합니다.

- **개인별교육프로그램 상의 이견에 관한 청문회 받을 권리**

부모는 자녀의 무료적정공교육의 규정과 연관해 고소장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정한 경우, 변호사, 변호인, 해당학생을 적법절차 공소에 참석시킬수 있는 권리; 공소를 공개할 권리. 어떤 조건하에서는, 공소담당관이 변호사 수임료그리고 그 건의 합의내에서 부모가 사립기관에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부여, 감액, 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적법절차 공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혹은 적법절차 공소에 연관된 완전한 절차상 보호의 통보 수령을 위하여는 행정청문회 사무실에 연락³¹하십시오.

- **분쟁조정 받을 권리**

부모는 그들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견을 중립인 중재인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양측이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분쟁해결책을 찾는 과정인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하기를 권장 받습니다. 부모는 단독으로, 적법과정과 분리되어 분쟁조정을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적법절차 공소가 계속되는 중에 중재조정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학구에 반(反)하여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는 권리**

²⁹ 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³⁰ Stay Put: “머물 것” 권리는 학교당국이 자녀분의 IEP 에 관해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귀하의 자녀분은귀하와 학교가 분쟁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될 때까지 현재 배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Stay put” rights apply when you dispute a change the school wants to make to your child’s IEP. By using this right, your child can remain in his current placement until you and the schools resolve the dispute).

³¹ 13 페이지 참조

만일 부모가 자녀의 학구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믿는다면,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장애인교육법, 주 특수교육법, 규정 준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고소장을 반드시 조사하여야만하며, 고소장을 수령한지 60 일 이내에 발견사항들의 서면보고서를 발행해야만합니다.

- **학교 징계와 대체 배치를 제보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별교육프로그램을 받는 학생의 정학과 퇴학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는 학생이 정학을 받거나 혹은 대체교육환경에 배치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장애학생도 그렇습니다.

만일 장애학생이 이와같은 배치에 10 일 보다 더 있었다면, 해당아동의 현재 배치의 적정성을, 그리고 장애가 비행의 원인인가까지를 숙고(熟考)하기 위해 개인별교육프로그램 회합이 반드시 열려야만합니다.

-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관한 방침을 제보받을 수 있는 권리**

학구는 사립학교에 부모에 의해 등록된 장애학생의 식별, 위치확인 그리고 사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구는 특수교육과 그에 연관된 서비스들을 이러한 학생에게 제공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구로부터 일부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추가 출처

이 통보는 연방, 주법의 절차상 보호의 약식(略式) 요약입니다. (20 USC Section 1412(d); 34 CFR 300.504; EC sections 56301(d)(2), 56321, and 56341.1(g)(1)) 부모와 아동의 특수교육 권리, 보다 자세한 이 권리들에 대한 서술은 캘리포니아 교육부, 특수교육분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소장을 접수시키는지를 포함하는, 부모의 권리나 분쟁조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교육부, 특수교육분과, 절차상 보호 알선 서비스에 전화 800-926-0648 로 전화하거나,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특수교육분과
절차상 보호 알선 서비스
1430 N Street, Suite 2401
Sacramento, CA 95814
전화 (800) 926-0648
팩스 (916) 327-3704

국지교육대리기구의 메디-칼 청구 프로그램의 학구 참가에 관한 통보

학구는 캘리포니아 건강관리 서비스부 그리고 교육부와 상호협조하여 학구로하여금 학교에 등록된 메디칼 학생들에게 제공된 선별 건강 서비스를 위해 연방 메디케이드 돈으로 배상 받는 것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령하는 돈은 학생들을 위한 건강 그리고 사회 서비스들에 곧장 재투자됩니다.

주와 연방 규칙과 지침에 따라, 우리는 귀하에게 학생정보 일부가 청구 목적만을 위해 (귀하 자녀의 메디칼 베니핏이 열람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기록에서 배상회복상(賠償回復商), 파라다임 건강관리 서비스 유한책임회사(LLC), 건강관리서비스부(DHCS)로 개방될 수도 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저희가 귀하의 그리하라는 동의를 수령했을 때에 한하여 개방될 것입니다. 개학 서류의 일부로서 혹은 개인별교육프로그램/개인별가족서비스계획³² 개발과 검토 과정(적용가능시) 도중에 귀하의 동의가 제공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유된 정보는 암호화(暗號化)되며, 저희의 상인과 건강관리서비스부 모두에게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저희의 이 프로그램의 참가의 결과로 공유될지도 모르는 교육기록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학생 이름, 생년월이, 건강관련 평가, 개입 그리고 알선 정보 (학교에서 수령한 서비스에 대한)
- 이러한 건강서비스 그리고 아동의 개인별교육프로그램/개인별가족서비스계획(적용가능하다면)

으로부터 선별된 데이터에 연관되는 의사의 기록

귀하는 언제라도 학생의 정보를 개방하기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의논하기위해 학교의 간부사무실을 편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그들이 학교 출석에 요구되는 서비스를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며, 부모는 귀하의 동의 혹은 비동의의 결과로 받게된 서비스에 대해 학구로부터 절대로 대금청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메디칼이 선별된 건강 서비스에 대해 학구에게 배상하는 동안, 귀하 자녀의 메디칼 베니핏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아야합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이미 실시되고있는 메디칼 배상이 가능한 건강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을 획득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그리하여 이 자금을 모든 학생에게 이용가능한 서비스들의 확대에 활용할 것입니다.

추가 주석:

비밀과 사생활 보장. 학구의 배상회복상은 학생기록을 비밀로, 부적절하게 정보가 활용되거나 노출되지 않게하기 위한 특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에 묶이며, 나아가, 저희의 상인은 건강보험 이동성(移動性) 및 책임 법³³(HIPAA)을 준수합니다. 추가로, 학구와 건강관리서비스부는 이 프로그램이 공유하는 정보의 활용과 보안규약 관리에 관한 특정한 조항들을 포함하는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제 3 자 의 법적 책임. 만일 귀하의 학생이 메디칼에 등록되고 또한 제 3 자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이 있다면, 건강관리서비스부는 만일 그들이 저희가 제출한 학교근거의 청구를 지불했다면, 제 3 자 유책(有責)의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메디칼 신청서가 승인되었을 때 제공된

³²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³³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직장인이 직업을 바꾸거나 잃었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옮기고,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또한 보호되는 건강정보의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법.